

# 보도자료

• 생산적 금융

• 신뢰받는 금융

• 포용적 금융

보도	2018.8.16.(목) 10시부터	배포	2018.8.16(목)
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**책 임 자**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(02-2100-2530)

담 당 자

서 나 윤 사무관 (02-2100-2533)

## 제 목 :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

- 핀테크 업계, 전문가 등은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이 제정되면 우리 핀테크 산업이 "큰 도약의 기회"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
- ◆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(금융위)을 "혁신의 플랫폼"으로 활용하여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적극 의견수렴 해나갈 예정

## 1. 회의 개요

- □ '18.8.16(목) 금융위원회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(CFO) 주재로 핀테크 업계,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「핀테크 라운드테이블」 회의를 개최하여,
  -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(만병두 의원 발의) 등 **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**하고,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**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** 등을 청취하였음

#### <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요>

**및 일시/장소**: 2018.8.16(목), 10:00 ~ 11:0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
#### ■ 참석자

- o 금융위: CFO(핀테크최고책임자/상임위원), 금융혁신과장
- ㅇ 유관기관 : 핀테크지원센터장, 금감원, 금융결제원, 금융보안원
- 분야별 민간분과위원장 :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/페이콕 대표, 비바리퍼블리카 (결제·송금), 레이니스트(혁신상품), 신한금융지주(금융회사), 코스콤(신기술)
- ㅇ 민간 전문가 : 홍익대학교 홍기훈 교수, 금융연구원 서정호 박사

#### ■ 주요 논의사항

ㅇ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상황, 관련 입법동향,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

### 2. 주요 논의내용

- □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**지난 8.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** 등을 계기로 **금융혁신**에 대한 **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**면서,
  -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의 제정,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음
  - 그간 비조치의견서,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,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,
  -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였음

< 참고 :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입법동향 및 주요내용 >

- (입법동향)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·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
  - $_{\star}$  '18.3.6일 민병두의원 발의  $\rightarrow$  '18.7.25일 정무위 상정  $\rightarrow$  '18.8월 법안소위 예상
- (주요내용)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금융서비스를 '혁신금융서비스'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부여,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입법 권고,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

## 3. 향후 계획

- □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」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되,
  - 법 제정·시행 前까지는 현행법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,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
- □ 아울러,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'금융혁신기획단'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여,
  - 보다 열린 자세로 업계,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



#### 참고

####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동향

- ◆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제정안 국회 계류 중
  - \* '18.3.6일 민병두의원 발의  $\rightarrow$  18.7.25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 $\rightarrow$  8월중 법안소위 상정 예상

#### 1. 추진배경

□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식 출시전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의 시장 영향을 검증하는 제도 마련 추진

<참고: 해외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현황('17년말 기준) >

- (영국) '15.11월 금융행위감독청(FCA)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 발표
  - '16.7월 이후 회차별로 신청을 받아 1~3차 테스트 진행
- (호주) 증권투자위원회(ASIC) 소관 규정과 관련하여 제한인가, 대리인, 규제 미실시 제도 운영 중
  - 투자자문 등 특정 영역의 경우, 혁신금융서비스를 별도 신청 없이도 테스트할 수 있는 Regulatory Sandbox를 '16.12월 추가 도입
- (싱가포르) '16.6월 통화청(MAS)이 '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'을 마련 (현재 1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완료)

### 2. 법률안 주요내용

- □ (혁신금융서비스 지정) 혁신성, 소비자 편익 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시장 테스트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부여
  - \*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·평가를 위한 '혁신금융심사위원회' 설치
- □ (소비자 보호·감독) 시범영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영업과정 관리·감독
  - \* 금융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마련·준수 의무, 사업자 무과실책임 부과,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,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
- □ (테스트 후속조치) 기간 종료시 원칙적으로 특례는 종료되나,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필요시 관련부처에 입법조치 권고
  - \*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시 최대 1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